

1. 개정이유

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개정(법률 제21027호, 2025. 9. 16. 공포, 2026. 3. 17. 시행)으로 수산신지식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및 육성·지원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 신설)

- 1)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‘수산업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’ 또는 제2호에 따른 ‘수산인’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
- 2) 수산신지식인 육성 및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·훈련,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
- 3) 수산신지식인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)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.

1.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
2.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 육성 및 활동 촉진에 필요한 교육·훈련,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신지식인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4조의2(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)</u> <u>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.</u> <u>1.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</u> <u>2.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</u> <u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 육성 및 활동 촉진에 필요한 교육·훈련,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신지식인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</u>